

◆ 질의와 회신 ◆

회계제도 운영 질의·회신

- 행정자치부 재정과 -

◆ 「질의·회신」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價値觀 變化와 삶의 質 追求로 인하여,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종래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지방행정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더구나,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民選자치단체장들의 지방행정 현장으로의 투입은, 그동안 인적 또는 물적관리가 좀더 중시되었던 자치단체를 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개발과 그 추진이라는 立體感있는 자치시대에 열어나가고 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각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의 공무원들은 당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지역문화조성사업이라든지 또는 당장 시급한 도시재개발사업이던지간에 法的인 瑕疵가 없고, 透明하고 公正한 계약을 통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행정자치부에도 지방자치단체 발주관련 시설공사, 기술용역 그리고 물품구매와 관련된 문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번 호부터 행정자치부 재정과에 근무하는 필자(문영훈사무관)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김정섭씨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최교신씨가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해당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의·회신을 정리하여 게재하기로 하였다.

1. 관련협회에 경영상태 신고사항을 오류로 한 경우에 평가방법은?

【질 의】

○○년도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계정과목을 오류로 작성 관련협회에 신고하여 경영상태증명서 발급 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 최저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구제 방법은 없는지?

회 신

-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이에 의하여 평가하며,
-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당해 발주기관에서 정한 제출기일까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되 관련협회에 신고한 내용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는 바,
- 본건과 같이, 재무제표 작성시 당해업체의 오류로 계정과목을 작성하여 경영상태발급증명서에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해야 할 것임.

2. 신인도(信認度) 평가시 중앙관서의 장의 범위는?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의 범위는?

회 신

시설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정부조직법제2조제2항에 의한 부처 또는 청을 의미하며,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함(예 중앙인사위원회).

3. 분할한 업체의 실적인정 가능여부

【질 의】

회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존법인을 분할한 경우에 기존법인에서 준공한 과거의 실적을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실적으로 승계하여 적격심사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분할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분할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분할 전에 준공한 과거의 실적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질 의】

○○사는 ○○신축공사를 공동도급 받아 시공 중 공동수급체의 부도(면허취소된 상태)로 잔여부분을 시공완료하고 전체금액에 대해 하자보증을 하였을 경우 전체규모에 대한 시공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시설공사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잔여 시공부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체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함.

5. 면허보유에 따른 실적 인정

【질 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계약하여 준공된 과거의 시공실적을 적격심사 평가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하며,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

6.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질 의】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와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실적의 인정 범위는?

회 신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7.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

【질 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있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 범위 및 인정규모의 의미는?

회 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이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위의 인정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하는 1건공사의 하한규모를 말함.

8.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평가기준

【질 의】

2002. 4. 12. 입찰공고하고 2002. 5. 29. 입찰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건설에서 제출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가 2002. 3. 31자 양수결 산서에 의거 2002. 5. 29.자로 관련협회에 등록한 평가자료인 경우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인정가능 여부

회 신

적격심사 각 평가요소(경영상태, 시공경험 등)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영상태평가의 경우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입찰공고일 이전에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져 적격심사 제출일까지 경영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그에 따라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평가가 가능함

9. 기술자보유관련 공사수행능력 결격사유 해당 유무

【질 의】

건설기술자 근무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 인협회에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2. 5. 4.일 입사한 자를 2002. 5. 14.일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일(2002. 5. 10) 현재의 기술자보유 확인서 상에는 기술자 보유 미달로 된 경우 적격심사의 공사수행능력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사유(△10점)에 해당됨.

10. 지역의무공동도급 시공실적 평가

【질 의】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한 공사에서 지역업체끼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거나 지역업체가 대표사로 구성된 경우에 그 지역업체가 시공능력액을 초과한 경우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모두 인정하는지

회 신

지역업체끼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거나 대표사가 지역업체라도 시공능력공시액 초과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시공비율대로 인정해야 함.